

선	기관의 장
람	



제 729 호

2006년 12월 26일 화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77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 3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78호(인천광역시남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전부개정규칙) 7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79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 규칙폐지규칙)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80호(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 규칙폐지규칙)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81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 15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43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49호(인천광역시남동구비전임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재공고) 2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50호(2007교통서포터즈채용시험서류전형합격자명단및 면접시험시행공고) 27

회								
람								

규	칙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6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남
동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
다.

제4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
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9조 제1항과 제3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
정」”으로 하고, 제3항 중 “채용구분”을 “영 제3조의 별표 중”으로 하며,
제4항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서(예시)												
		1. 채용예정분야												
		2. 사업의 필요성												
		3. 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내용												
		◦직무특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필요지식												
		◦필요학력(관련 전공분야등)												
		◦경력요건												
		◦요구자격증												
		◦기타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등)												
		5. 채용신분 및 “월 봉급액”												
별지 제1호 서식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성과계획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table border="1"> <tr> <td>소속 및 근무부서</td><td>채용구분</td><td>성 명</td><td>채용계약기간</td><td>담당예정업무</td></tr> <tr> <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생략>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 목표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기준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가)			
	나)			
	다)			
	라)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근거법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개정사항(법명변경 및 인용표기)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봉급인상기준을 명확히 하며,
- 채용시 갖추어야할 서류의 종류를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봉급인상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9조 제3항)
- 인용된 타 법령제명을 변경된 제명으로 정정(안 제9조 제4항)
- 별지1호와 별지2호를 각각 별지2호와 별지4호로 하고 별지1호와 별지3호를 각각 신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6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01조의2 및 남동구 기구설
치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에 있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①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

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남동구 기구설치 조례(이하“직제상”이라 한다)에 의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법정대리) ①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등에 의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이하“사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렬별 차하급자가(사실상 직제순) 대리한다.
- ②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 직렬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동일 직렬의 차하급자가 없는 경우 사무분장에 의한 공무원이 대리한다.
- ③제2항의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무분장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2002.3.25 법률 제6669호 및 2005.8.4 법률 제767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권한대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대리 요건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법규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

-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서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계장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대리의 지정 대상자를 상위서열 자로 규정
- 승진임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인에 대하여 장기간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잘못된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종전 직급순위에 의한 지정 시 대두된 문제점(건축 및 토목 업무를 행정직이 대리함에 따른 전문성 부족, 인사전횡)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대리의 대상자를 직위, 직급, 직렬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정대리의 지정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6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
다.

부 칙

이 시행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금의 운용, 용자대상 및 대상자 신청,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두었으나 2006.9.29 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여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게 됨으로 폐지함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6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폐지와 관계없이
상환기간 만료 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폐 지 이 유

□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운용, 용자대상 및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두었으나 2006.9.29 개정 공포 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포함하여 전부 개정되어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게 됨으로 폐지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6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정년)제1호 중 “57세”를 “60세”로 한다.

제8조제1항관련 「별표1」의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지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가대표 선수이거나”를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2관왕 이상인자”로 한다.

제13조제2항관련 「별표7」의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제2항관련 「별표9」의 우수선수유치비 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별표1」은 2007.1.1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지급표

호봉	감 독	코 치	선 수	조리사
1	1,279,840	1,095,180	910,400	498,570
2	1,302,880	1,117,310	931,750	519,930
3	1,326,040	1,107,610	953,110	541,280
4	1,349,190	1,161,840	974,340	562,420
5	1,372,120	1,183,970	995,710	583,770
6	1,396,840	1,207,910	1,018,960	607,030
7	1,421,920	1,231,730	1,041,770	629,970
8	1,446,630	1,255,900	1,065,050	653,120
9	1,471,700	1,279,950	1,087,980	676,280
10	1,496,430	1,303,790	1,111,240	699,420
11	1,523,290	1,329,750	1,136,080	724,150
12	1,549,580	1,355,370	1,161,030	748,880
13	1,576,340	1,381,110	1,185,770	773,940
14	1,603,090	1,406,850	1,210,480	798,680
15	1,629,730	1,432,700	1,235,560	823,620
16	1,654,470	1,456,520	1,258,590	
17	1,679,300	1,480,590	1,281,750	
18	1,704,360	1,504,410	1,304,550	
19	1,729,090	1,528,470	1,327,830	
20	1,754,040	1,552,400	1,350,870	
21	1,776,970	1,575,320		
22	1,800,120	1,598,490		
23	1,823,160	1,621,520		
24	1,849,340	1,644,680		
25	1,869,130	1,667,490		
26	1,890,610	1,688,850		
27	1,911,840	1,710,200		
28	1,933,310	1,731,670		
29	1,954,560	1,752,910		

[별표7]

입상보상금 지급구분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입 상	종 목 별		지 급 액		
			1위	2위	3위
	감 독		250,000	150,000	100,000
	코 치		200,000	100,000	70,000
	선 수	전국규모	300,000	200,000	100,000
		전국체전	500,000	300,000	200,000
		아시아규모	1,000,000	700,000	500,000
		세계규모	3,000,000	2,000,000	1,000,000
기 록 갱 신 선수	기 록 구 분		지 급 액		
	대회신기록 (타이기록)	전국체육대회	500,000		
		전국규모대회	300,000		
	한국신기록 (타이기록)		800,000		
	세계신기록 (타이기록)		1,500,000		

※ 비 고

- 1) 동일대회에서 2개이상 입상한 경우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100%, 나머지분야에 대하여 50%를 지급한다.
- 2) 선수 및 지도자는 전국체육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입상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며,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를 추가 지급한다.
- 3) 입상부분과 기록갱신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표9]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급 수	유 치 비	지 급 액
1 급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에 출전하여 3위이내의 입상 경력자	25,000,000원
2 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국체전에서 1위에 2회이상 입상한 자 2. 국가대표 상비군인 자 3.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당해종목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	20,000,000원
3 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 이상 입상경력자	10,000,000원
4 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에 입상경력자	7,000,000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운동경기부의 후생복지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실력향상과 경쟁력향상을 도모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우수선수 인센티브제 운영사항 등 우리구의 육상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독 및 코치의 정년 상향조정
- 운동경기부 봉급지급표 조정
- 운동경기부 운동수당 지급기준 조정
- 운동경기부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조정
- 운동경기부 우수선수유치비 지급기준 조정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443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7. 1. 9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12. 26 ~ 2007. 1. 9 (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0무7853	이부식	남구 주안동1453-24 성일아트빌 B-201	인천지방법원 (98카단45736)	박진수	계양구 작전동 뉴서울 (아)1동1306호
86소1048	전현정	중구 향동7가27-107 비취맨션 16동1209호	주정차위반	창원시교통 관리사업소	창원시 두 대동 145번지
인천31무8792	김현만	남동구 간석동775-1 팬더(아)다-512호	인천지방법원 (98카단41246)	경인상호 신용금고	남동구 간석동 207-6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6. 12.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6 - 144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주 · 정차 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10명

2. 시험 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최종) : 면접시험 (도로교통법 및 일반상식 등)

3. 응시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험계획공고 전일 현재 응시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인천시 남동구로 되어 있는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40세이상~55세이하(1952.1.1~1967.12.31)인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①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 경찰관 경사 이상, 군인 상사 이상, 소방관 소방장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교사(초등학교 이상)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서 교통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상시종업원 30인이상 기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⑤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⑥기타 모 · 부자가정세대로써(법적보호대상이 아닌 제도권밖 세대 포함) 과거 2년이상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4. 채용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연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12. 27(수) ~ 12. 28(목) [2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 함)

6. 시험 일시

- 1차 시험 (서류전형) : 2006. 12. 29(금)

- 2차 시험 (면접시험) : 2007. 1. 4(목)

7.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서류 전형) : 2007. 1. 3(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
- 2차 시험 (면접 시험) : 2007. 1. 5(금)
※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

8. 제출 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

- 응시원서1통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첨부) 각 1통
- 사진 2매 (반명함판 3.5cm × 4.5cm) : 응시원서에 부착
- 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9. 기타 사항

- 보수 수준은 동일자격 기준의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이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격일제, 월평균 13일 근무, 근무시간 : 주24시간-1일 8시간 기준)
※ 일·공휴일, 야간근무등 근무조건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원서 접수는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원서 교부 및 접수 창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첨부 화일 (응시 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 서식)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 채용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 주차단속팀 【 ☎(032)453-2892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응 시 원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전임계약직공무원(마급)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공개채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06년 12월 일 성 명 (인)

① 주 소	시, (우편번호) - ※ 제1연락처 ☎ 제2연락처 ☎ 핸드폰				
② 최종출신 학교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			
③ 경 력	년 월 일부터	종사			
※ 총간부직경력	년 월 일까지	직위 :			
()년()월	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	직위 :			
④ 학위소지 사항					
⑤ 자격증소지 사항					
⑥ 포 상 경 력					
⑦ 기타참고 사항					
⑧ 응시직급 응시분야	비전임계약직(마)급 주·정차 단속분야	⑨ 성 명	(한글) (한자)	⑪ 성 별	남 여
※ 응시번호		⑩ 주민등록번호	(세)		
※ 제출서류 1. 경력증명서 1통(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첨부) 2. 자기소개서 1통 3. 사진2매(원서첨부용)					

계 인

⑧ 응시직급 응시분야	비전임계약직(마)급 주·정차 단속분야	응 시 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한자)	⑪ 성 별	남 여
		⑩ 주민등록번호	(만 세)		

※ 위의 제반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이 되므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5,000원 [원서 뒷면에 첨부]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가. 작성요령

1.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연락처 1, 2 핸드폰 또는 전화번호 기재)
 2. 최종 출신학교를 기재
 3. 경력에는 “공고 상에 있는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간부직 경력을 기재하고 총 간부직 경력은 년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하고, 14일 이하는 절사하여 반드시 기재.
 4. 최종 학위를 기재.
 5. 자격증 (국가 공인) 취득사항을 기재 (운전 면허증 포함)
 6. 정부 · 공공기관과 근무처에서 수여 받은 포상 경력을 기재.
 7. 기타 참고사항 : 추가할 경력 · 자격증 등을 기재.
 8. 기재하지 않음
 9. 성명은 한글과 한자 란에 구분 기재
 10.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2007. 1. 1일 현재 만으로 환산한 나이를 기재
 11. 해당되는 성별에 ○표.
 12. 사진 2매 (반명함판) 부착
- ※ 응시 번호는 본인이 기재하지 않음

나. 준수 및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2.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자는 면접시험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 응시표 ·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4.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7. 경력증명서는 관련 기관 · 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원실에서 근무시간 (09:00~18:00) 내 구입할 수 있습니다.
 9. 수입증지는 응시원서 뒤편 중간부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호											-						
		한 자																												
재 직 및 포 상 경 력 사 항	업 체 명 (기 관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속 (퇴 직 당 시)											직 위 · 직 급 (퇴 직 당 시)																		
	실재직기간 ※휴직기간등제외	. . .부터 . . .까지(만 년 월)																												
	간부재직기간 ※총 년 일	. . .부터 . . .까지 부서명										직위																		
		. . .부터 . . .까지 부서명										직위																		
상 별 사 항 ※최근10년간	년 월 일 (종류)										(시행청,회사등)										(포상사유)									
	년 월 일 (종류)										(시행청,회사등)										(포상사유)									
업 체 주 소												업 태 (업 종)																		
상시근로자 수 ※증명발급일 기준		명										제 출 용 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시험응시용																
증 명 발 급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 날인		(인) ※담당전화☎() -																
위와 같이 본 업체에 재직한 경력을 증명합니다.																														
2006. 12. .																														
대 표 자 직 · 성 명 :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 1. 실제 재직 기간에는 휴직기간, 군 입대기간, 방위산업체의 경우 군 복무 의무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및 고교졸업일 전의 재직기간은 제외
2. 간부직 재직기간 란과 상별사항 란, 상시근로자수 란은 투명테이프로 부착하고 증명 발급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3. 기간산정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하고, 14일 이하는 절사
4. 상별사항은 2006. 12월 현재 최근 10년간 포상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고 포상증빙자료 (표창장 사본 등)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포상종류 란에는 표창,훈·포장등을 기재하고 시행청 회사등 란에는 대통령,국무총리,인천광역시장,국무위원인 장관명, 근무처인 경우 사장, 회장등 직위를 기재
5. 증명발급자는 증빙자료요청(경력 및 포상, 사업자등록증사본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경력증명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워드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7. 회사의 폐업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되 법인등기부등본등 간부경력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8. 증명발급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 032-453-2892)

붙임4)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

○ 응시동기 :

○ 자기소개 (구체적으로 작성) :

○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메일 주소 :

○ 기타 (특기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450호

2007 교통서포터즈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서포터즈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시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7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모집분야	합격인원	응시번호	성 명		
주·정차 단속보조	23	1	김	희	선
		2	정	미	숙
		3	김	화	자
		4	김	미	경
		5	강	덕	레
		6	지	동	임
		7	유	미	숙
		8	이	혜	원
		9	임	혜	령
		10	김	경	자
		11	김	정	임
		12	강	혜	숙
		13	정	미	자
		14	윤	은	옥
		15	이	은	순
		16	양	승	란
		17	김	혜	원
		18	윤	선	영
		19	정	윤	화
		20	김	연	숙
		21	김	경	희
		22	이	지	연
		23	김	미	애

□ 면접시험

○일시 : 2006.12.28(목) 14:00

○장소 : 남동구청 지하간담회장

○서류전형 합격자는 당일 13:30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시험장소에 입장,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